

[사 건 명] 행심 2017 - 3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금지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7.9.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 □구 △△동 ■■■■■-■ ■■■■■㎡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이라고 한다)를 ■■■■■로부터 대부받은 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에 폐기물 수집, 보관, 처분업(이하 ‘의류수거업’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1. 경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금지’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7. 9. 1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9. 20.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인력 1-2명에 의한 수작업으로 헌옷을 분리작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재활용 의류수거 활동을 위해 시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학생의 교통안전 문제와는 관계없으며, 또한 2017. 10. 17. 오전에 △△중학교 등교상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주 이용도로로 전교생의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이 정문으로 등교하였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학생은 9명에 불과하므로 주통학로가 아니며, 폐기물 수집차량 운행시 학생보호를 위하여 △△중학교 앞으로 통과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운행토록 통행을 준수할 예정이며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주거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 만큼, 학교의 교육환경 저해와 무관한 시설이다.

나. 피청구인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 등 정확한 판단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금지처분 통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업소에서 차량통행으로 이용하고 하는 6m의 작은 이면도로는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많아 좁게 느껴지는 도로이고,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염려되고, 피청구인이 2017. 9. 27. 이 사건 신청지를 재확인한 결과, 의류수거함이 다수 산재되어 있고, 교문 앞 도로에 화물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운행되며 ♣♣♣차 ♣♣♣아파트 입구와 이 사건 신청지 입구가 마주보고 있어 학생들 교통안전이 우려된다.

나. 피청구인은 △△중학교에 조사의견을 의뢰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시 참관조치와 신청지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심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인 날 일시적인 한정된 시간에 통학 학생 수 등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1. 관계법령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3937호) 제8조, 제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신청지는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9m, 경계선으로부터 125m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 2) 이 사건 신청지는 청구인이 □□□□□□로부터 2020. 7. 4. 경까지 의류수거업으로 특정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곳이다.
- 3) △△중학교는 학교 전체 재적 학생 중 1090명 중 이 사건 신청지 건물을 통과하는 학생수가 21명으로서 주통학로는 아니지만, 업소에서 차량통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6M의 작은 이면도로는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많아 좁게 느껴지는 도로로서 통학길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염려되나 등·하교시간을 피해 차량운행을 한다면 교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를 2017. 7. 7. 경 인천광역시로부터 2020. 7. 4. 경까지 3년간 고엽제 복지사업(의류수거)의 용도로 대부를 받았는 바, 대부의 용도가 의류수거로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의류수거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로부터 적법하게 대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점, 둘째, 청구인의 의류 수거업을 통하여 악취나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가사 청구인의 의류수거와 분류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를 해제할 경우에 차량으로 인한 △△중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가능성이 있지만, △△중학교 의견서와 같이 주통학로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에서 전혀 안보이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차량을 등하교 시간을 피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중학교 후문이 아닌 쪽을 택하여 운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의 위험이 적어서 학교교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

건 신청지를 금지하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